

수원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190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8887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19049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권석현, 조두경, 최광호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강태운, 김민성

변론 종결 2021. 7. 20.

판결 선고 2021. 8. 24.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9. 1. 31. 접수 제114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C은 피고와 혼인 중이던 2012. 12.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9,600만원에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9. 1. 31.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4, 8(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2016. 7. 20. C과 사이에 C이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주식 13,000주를 대금 6,500만원(1주당 5,000원)에 매수하기로 예약하고, C에게 2016. 7. 20. 1,000만원, 2016. 7. 21. 2,000만원, 2016. 11. 2. 2,500만원, 2016. 11. 4. 1,000만원 등 합계 6,500만원을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 ② C은 2017. 7.경 D의 무선전력전송사업부분을 자신이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이라는 새로운 회사로 이관하여 코스닥에 상장시킬 것이니 원고가 기존에 매수하였던 D 주식을 새로운 법인인 E 주식으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8. 21. C과 사이에 '주식매매예약계약(주식교환용)'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③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원고는 기존에 매매 예약하였던 D 주식 13,000주를 반환 입고하고, C은 새로운 법인인 E의 주식 26,000주로 대체 입고시키며(이 사건 계약서 제2조 1항), C은 E을 2017-2018년 이내에 기술특례 상장할 것을 보증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C에게 주권을 반환함과

동시에 예치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계약서 제4조 1항)인 사실, ④ E은 2018년까지는 물론 아직까지도 기술특례 상장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C은 E을 2017-2018년 이내에 기술특례 상장할 것을 보증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예치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E은 2018년 이내에 상장을 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C에 대하여 예치한 주식매매대금 6,500만원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었다.

(2)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쌍방은 E의 상장기한에 관하여 'C은 회사를 2017-2018년 이내에 기술특례상장할 것임을 보증하며, C이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C에게 주권을 반환함과 동시에 예치받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원만한 상장을 위해 선정한 주관사(증권사) 및 회계사 등의 사전 컨설팅에 의한 상장기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자의 과반수(계약 주권수 기준) 이상의 동의에 의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의 상장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계약서 제4조). E은 국내 기술특례상장의 어려움으로 캐나다 상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19. 1. 25. 주주모임을 개최하여 주주1) 들과 설명회(간담회)을 개최하여 기술시연을 하였고, 위 간담회에 참석한 주주들로부터 계약연장 및 캐나다 상장을 위한 상장연장에 대한 합의를 받은바 있다. 즉, E은 2020. 3. 9. 이 사건 계약 및 교환계약의 당사자들 중 1,202명으로부터 계약연장의 합의와 캐나다 상장을 위한 상장시점에 대한 연장합의를 받았고, 동의자는 총 발생주식(20,200,000주)의 87.77%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상장기한은 연장되어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원고는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위 계약서 제4조 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상장 시점의 연장에 계약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2019. 1. 25. 주주모임에 참석하여 연장에 동의를 해주었거나 또는 그 이후에라도 연장 동의를 해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C의 채무초과상태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시 영통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이 적극재산으로
합계 119,979,664원의 예금채권²⁾과 이 사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F에 대한 주식매매예약금반환채무 1억 원, 주식회사 G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362,792,000원³⁾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C의 적극재산은 119,979,664원, 소극재산은 462,792,000원(= 1억 원 + 362,792,000원)
이상이 되었으므로,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 주식 6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가치는 2016. 5. 기준으로 평균 767,070,000원이고, ② 2019. 2. 28.경에는 E의 주식
1,95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다룬다.

살피건대, D나 E은 모두 모두 비상장회사로서, 을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회사들의 주식이 순자산
내지 수익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비상장주식을 C의 적극재산에 산입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피고가 혼인시부터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보태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 중 일부(합계 8,180만 원)를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남편인 C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번복되었고, 따라서 그 일부는 피고 소유인데 C에게 명의신탁해 둔 셈이므로
그 만큼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살펴보건대, 을 6,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특유재산이라는 사실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중남

별지

1) 주주모임이라고 명칭 하였으나, 참석자들은 주주 및 이 사건 매매예약, 교환계약의 권리자들을 포함하고 있다(편의상 주주라고 칭함).

2) 2019. 1. 31. 기준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0원
I 은행	(계좌번호 2 생략)	0원
I 은행	(계좌번호 3 생략)	10,000원
I 은행	(계좌번호 4 생략)	0원
I 은행	(계좌번호 5 생략)	10원
J은행	(계좌번호 6 생략)	104,805,939원
J은행	(계좌번호 7 생략)	13,907,608원
J은행	(계좌번호 8 생략)	1,256,107원
합계		119,979,664원

3) 2019. 1. 31. 기준

G은행 화양동지점	2012. 12. 24.	28,500,000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016. 3. 18.	117,867,000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17. 5. 25.	80,000,000원
경기신용보증재단	2015. 4. 24.	136,425,000원
합계		362,792,000원